# 강화도조약과 개항

담당교수: 배민재

#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

- 1832년 영국 동인도회사 소속 상선 Lord Amherst호
- 청국 1842년 난징조약
- 일본 1854년 미일화친조약
- 1866년 오페르트 도굴사건
- 1866년 병인양요, 프랑스
- 1871년 신미양요, 미국
  - → 프랑스, 미국 모두 후발자본주의 국가

## 메이지유신 전후 조선-일본 관계

- 1854년 미일화친조약 : 영사·공사의 교환과 내지여행권, 카나카와 와(神奈川)·나가사키·니이카타(新潟)·효고(兵庫)·시모타(下田) 등 5개 항구의 개방, 도쿄(東京)·오사카(大阪) 지역에서 외국인의 상업활동 허용, 외국인 거주권·임차권인정, 개항장에서의 자유무역과 협정관세, 아편무역금지, 화폐교환규정, 영사재판권 등
- 1867년 12월 왕정복고(메이지유신) 선언
- 1868년 3월 신정부, 조선외교 쓰시마번(對馬蕃)에 위임
- →쓰시마번, 왕정복고 알리는 외교문서 원안 작성
- 1869년 10월 천황정부, 쓰시마번의 대조선외교 특권 박탈

## '서계문제'

• 日本國 左近衛小將對馬守 平朝臣義達 / 呈書 朝鮮國 禮曹參議公 閤下

아뢰올 바는 우리 나라의 시세가 크게 바뀌어서 정권이 황실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귀국과의 隣宜를 굳게 하는 데에도 크게 기뻐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別使를 보내어 그 전말을 具陳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갖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토(京都)에서 조정으로부터 勅命을 받아 특별히 상을 받고 작위를 올려 받아 좌근위소장으로 進官하였습니다. 거기에 또한 교린의 직을 영원토록 담당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證明印記를 받았으니, 요컨대 양국 교제는 더욱 誠信을 두터이 하고 영원히 변함이 없도록 하라는 叡慮 (천황의 뜻)이니 은혜가 지극합니다. 이번 서한에는 특히 신인을 찍어 조정에 성의를 표합니다. 귀국 역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圖書(직인)를 받아 (교제를 해) 온 것은 후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특명이니 어찌 以私害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 뜻이 이와 같습니다. 귀조가 다행이 이를 체량하시길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日本外交文書》1권, 690쪽).

#### 메이지 정부의 對조선정책

- 1> 단교론(斷交論) : 조선과 단교하자
- 2> 무력 정한론(征韓論): 무력으로 정벌하자
- 3> 대청교섭선행론(對淸交涉先行論) : 청과 대등한 관계 구축한 후 조선과 교섭하자

- 강경론 우세
- 산죠 사네도미(三條實美),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 강경파
-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 외유파

# 고종의 대외정책

- 1873년 11월 흥선대원군 실각
- 조정내 집권세력 교체, 암행어사 파견
- 경상좌도 암행어사 박정양(朴定陽): 대일외교 담당 관료들에 대한 조사, 왜관주재 일본 관리와 접촉 임무
- 일본과의 관계개선 추진, 왜학훈도 현석운(玄昔運)에게 일본과 교섭 지시
- WHY? 일본의 대만침공
  - 청국 자문의 영향

## 운요호사건과 조선정부의 대응

- 서계의 문제점 : '大日本'·'皇上' 등의 용어와 그 본문이 일본어로 된 점, 그리고 조선에서 쓰시마에 주었던 직인(圖書)의 날인, 사신 접대를 위한 연회석상에서 양복 착용
- < 군함을 파견하여 쓰시마 근해를 측량케 하면서 조선의 내홍에 편승하여 우리들의 협상에 대한 후원을 해 줄 것을 청하는 일 >

쇄국파가 아직 그 기세를 되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힘을 사용한다면 가벼운 힘의 과시로써도 목적을 이루기는 용이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함 한두 척을 급파하여 쓰시마와 이 나라 사이를 드나들게 하고, 숨었다 나타났다 하면서 해로를 측량하는 체하여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끔 우리 정부가우리들 사신의 협상 처리의 지연을 힐책하는 듯한 표시를 보임으로써 저들에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언사를 쓴다면, 안팎으로부터의 성원을 방패삼아 일 처리를 다그칠 뿐 아니라, 국교 체결상 웬만큼의 권리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도 틀림없는 일입니다. 미리미리 저들의 바다를 측량해 두는 것은 훗날에 일이 있건 없건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日本外交文書≫8권, 71~72쪽)

- 1875년 4월 20일 운요호 부산 입항
- 5월 9일 제2테이묘호(第二丁卯號) 부산 입항
- '일본의 서계에 관해 이렇게 버틴 것이 지금 이미 일 년이 되어 가니 먼 나라 사람이 체류하는 번거로움과 시끄러움이 실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하문하시니 여러 대신들이 아룀에 있어 깊이 생각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저들의 서계에 칭호를 참람하고 망녕되게 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만, 과군이니 폐읍이니 하는 禮讓하고 謙恭하는 말은 저 섬 오랑캐에게 갖추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그 나라에서 황제라고 칭한 것은 周나라 平王 시대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미 수천여 년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서계에서 본국이 칭하는 대로 따른 것도 신하로서 부득이하여 그렇게 한 것이니, 이는 오직성상께서 어떻게 포용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 사람들이 스스로 國制를 변경하여 크게 隣好를 닦자고 한 것이 지금까지 저지당하여 許接하지 못하고 있으니, 필시 한스럽게 여기는 바가 있을 것인바 문제를 일으킬 만한 단서가 십분 염려스럽습니다. (≪承政院日記≫, 고종 12년 5월 10일)
- 8월 21일 운요호 강화도 해안 정박, 초지진 포격, 운요호 함포사격
  - → 초지진 파괴, 영종도 상륙, 민간인 살상

# 강화도 조약 체결 과정

- 1876년 1월 5일 접견대관 신헌(申櫶), 부관 윤자승(尹滋承) 임명
- 1차 회담 운요호사건에 대한 책임문제 제기
- 2차 회담 운요호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약체결 요구
- 3차 회담 회답 지연시 무력 사용 통고
- 1월 25일 신헌(申櫶)에게 교섭 전권 위임
- 2월 6일 조인식

## 조일수호조규의 내용과 성격

- 第1款 朝鮮國은 自主國이며 日本國과 平等한 權利를 保有한다.
  - → 청국의 종주권 부인
- 第2款 日本國政府는 지금부터 15개월 후 언제든지 사신을 朝鮮國 京城에 파견하여 禮曹判書와 親接하여 交際事務를 商議하도록 할 수 있다. → 수도에 외교사절의 상주, 상주외교공관 설치
- 제4, 5관 개항장의 선정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 제6, 7관 일본 선박의 입항 및 측량 허용
- 제8, 9, 10관 영사재판권 관련
- 제12관 "右에 議定된 11款의 조약은 本日부터 양국이 信守遵行한다. 양국 정부는 이를 다시 變革할 수 없으며 영원히 信遵하여 양국의 화 신을 두텁게 할 것이다."